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43 | 2024.07.09. (2024.07.01~07.0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01~07.07)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정부(기획재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는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운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4.4.3.(수)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한바 있으며, 이는 7.1일부터 시행되어 기술기업을 충실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술신용평가 제도개선,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 강화,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5대 추진과제 : ①기술금융 원래의 취지 강화, ②평가의 독립성 강화, ③기술신용평가 내실화, ④사후평가 강화(품질 심사 평가), ⑤규율체계 정비

** 10개 세부과제 : ①우대금리의 명확화, 신용대출 확대 유도, ③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간 균형과 견제, ④은행에 대한 행위준칙 마련, ⑤은행의 양적확대 경쟁 유인 방지, ⑥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개편, ⑦관대한 평가를 방지하는 기준 마련, ⑧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⑨평가서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 ⑩신정법에 규정된 행위규칙 정비

<금융감독원>은 '24.7.19.「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여야 하며,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할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법(행정)예고】

<법무부>는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의 지정 범위,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원료의약품의 수입 현황과 의약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고,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으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를 국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간소화하여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의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시 현장조사 외의 방법으로 확인·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 이후 자산보유액을 3억원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육성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과 **「반**

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주요 앱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아울러 앱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마켓을 통하지 않고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앱의 구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기술발전 및 산업진흥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추진과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검·인증 등의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5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8인)」,**

대규모 점포등의 입점 지역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근로자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3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의원 등 12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방식을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에 간소화된 방식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영하여 영업실적에 비례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등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이번주 국회는 각 상임위별 소관기관들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세부일정은 아래 본문의 국회의사일정 참조)인바, <기재위>는 7/8(월)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및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7/9(화) 한국은행 업무보고, <문체위>는 7/8(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간사 선임 등, <해수위>는 7/9(화) 간사 선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등. 7/10(수)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국토위>는 7/10(수) 국토부교통부 업무보고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관계부처 합동) 9
-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기획재정부) 16
- 기업-정부 맞손,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국토교통부) 21
- 기술금융 개선방안 7.1일부터 시행(금융위원회) 22
-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금융감독원) 23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 27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 2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환경부) 28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9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29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3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31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31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32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32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32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34
-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35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36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36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환경부) 37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38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3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40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41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4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4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42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4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43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44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4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4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4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46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46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47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3인)	47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4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50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51
•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5인)	52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4인)	53
•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53
•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2인)	5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55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8인)	56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57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57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58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59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5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2인)	6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61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6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6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62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63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63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65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65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0인)	6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67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67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6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68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69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69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6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01~07.07) [바로가기](#)

- [공정거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 Vol. 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함께 발표

2024-07-03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을 진단해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경제정책 과제들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있는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어려운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들을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발표하였음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으로는

- '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 강화
 - 특히, 현장 애로사항 점검 등을 바탕으로 ①소상공인·서민 지원, ②물가안정·생계비 경감, ③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 ③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
- 아울러 단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 병행

< 2024~2025년 경제전망 >

	2023년	2024년 ^e		2025년 ^e
		[수정]	[당초]	
■ 실질성장률(%)	1.4	2.6	2.2	2.2
■ 소비자물가(%)	3.6	2.6	2.6	2.1
■ 취업자증감(만명)	32.7	23	23	17
- 고용률(%, 15세 이상)	62.6	62.8	62.8	62.9
■ 경상수지(억불)	355	630	500	700
- 수출(전년비, %)	△7.5	9.0	8.5	6.0
- 수입(전년비, %)	△12.1	2.0	4.0	4.5

< 2024~2025년 경제전망 요약 >

	'23년 실적	'24년		'25년 ^e
		1/4	연간 ^e	연간
전망 전제				
세계경제(PPP)*	3.1	-	3.1	3.2
Dubai 유가(\$/bbl)	82	81	84	81
실질 GDP	1.4	3.3	2.6	2.2
민간소비	1.8	1.0	1.8	2.3
설비투자	1.1	△1.0	2.0	3.8
건설투자	1.5	1.6	△1.2	△1.2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7	2.5	2.5	3.0
경상 GDP	3.3	7.3	5.5	4.5
고용률(15세 이상, %)	62.6	61.6	62.8	62.9
취업자 증감(만명)	32.7	29.4	23	17
소비자물가	3.6	3.0	2.6	2.1
경상수지(억달러)	355	168	630	700
상품수지(억달러)	341	189	720	800
수출(통관, %)	△7.5	8.1	9.0	6.0
수입(통관, %)	△12.1	△11.1	2.0	4.5
서비스·본원·이전 소득수지(억달러)	14	△21	△90	△100

* OECD Economic Outlook ('24.5월)

① <소상공인·서민 지원>을 위해서는

□ (경영부담 완화)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 + 주요 비용(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부담 완화

*① 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 ②보증부 대출 만기연장, ③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 매출채권 팩토링 프로그램 확대,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맹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등 통해 매출기반 확대

□ (성장촉진)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 및 소기업으로의 도약 지원

○ 업종별·규모별 사업장 진단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기기 및 고객·매출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 보급

○ 소상공인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 “마일스톤 방식 정책자금”* 신설

□ **(재기지원)** 과감한 채무조정, 취업 재창업 연계 지원 등 확실한 재기 지원

- 채무조정 대상 확대* 등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30→40조원+α)하고, 취업·재창업 연계지원**을 통해 취약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강화

*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 확대 : (現)'20.4월~'23.11월 → (改)'20.4월~'24.6월

신청기간 연장 : (現)'25.10월 → (改)'26.12월

- ** ① 취업 교육(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프로그램, 고용부) 또는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희망리턴패키지 내, 중기부) 안내 연계
 ②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10%p 상향
 ③ 교육 이수 후 취업 재창업 성공 시, 공공정보 등록 즉시해제(現 1년)

□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지원 플랫폼” 가동

-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 금융, 취·창업, 경영안정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

- * (1단계 : 7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 안내
 (2단계 : 8월) 중기통합콜센터(1357)를 통한 소상공인 안내 가동
 (3단계 : '25.1월~)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가동(중기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 전용 채널 신설 등)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대책>



□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 → 소상공인·서민 등 집중 지원

- ①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부담 경감(약6,800억원),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생활안정자금(+5만명, 약2,800억원) 등 지원 확대
- ② '25년 주요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집중 투자

② **<물가안정·생계비 경감>**을 위해서는

□ **(재정지원)** 농수산물 할인지원·비축, 유통구조 개선,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6조원 지원

- '24년 하반기 과일류, 오렌지농축액 등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약 1,600억원 지원)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 유도
-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한편, 마늘·양파·건고추 14천톤 신규 비축, 김 신규 양식장 개발(2,700ha) 등을 통해 수급 우려에 선제적 대비
- 저소득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한부모) 대상 정부양곡(시중가격 40%) 판매 가격을 20% 추가 인하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 다양화(12월), 수산물 거래 개시(7.1일) 및 품목 확대 등 추진

□ **(공공요금)**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 완화

- 금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안정적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부담 완화 등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성과 반영

□ **(시장 감시)**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시 소비자 고지 의무 부과('24.8월~), 공공플랫폼(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정보 제공 확대하여 편법인상 방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물가 불안품목·분야 등에 대한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를 발표(매분기)하여 합리적 소비 뒷받침
-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 조사·공개

□ **(핵심 생계비 경감)**

- (의료)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복권기금 +100억원)
 - * (기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지원 여부 판단 → (변경)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 합산('24.1월~)
- (식품)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24개→229개 지자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료품비 부담 경감('25년)
- (교육) '24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1.7%)하고,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을 확대하여 학자금 부담 완화

- (통신)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하여 알뜰폰 경쟁력 제고 지원
 - 거래사실 확인 시스템 구축('24.下) 등을 통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 유도
- (임대료)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2년 연장('24.12→'26.12)

□ (생활안정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中企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한 소득세 감면 지원 강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90% 감면) 대상 요건을 완화
 - 경영성과 공유 촉진을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24.12→'27.12)
 - * 구체적 세액공제 및 감면 내용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24.7)
 - 中企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24.12→'27.12) 하고, 공제요건 완화(공제납입 5→3년)
- (실업자) 실업자·비정규직 등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한도를 대폭 확대 (1인당 1,000 → 1,500만원, ~'24.12월 한시)
- (취준생) 취약계층 등이 국가전문자격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별 근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불법추심 피해자)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개편
-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③ <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을 위해서는

- 공공투자·민자사업·정책금융 하반기 투·융자규모를 '24년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 하여 건설투자 등 활성화 뒷받침
 - '24년 계획의 차질없는 집행 및 내년 사업 당겨 집행 유도,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확대
 - 기존 및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을 적극 발굴하여 '24년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5조원 수준 확대(15.7 → 20.0+a조원)
 - 당초 계획 대비 정책금융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를 +8조원 확대(598.9→606.9조원)
-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
 - 공사비 분쟁 우려시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등 공사비 검증 신속화(5→3개월)
-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결성하여 자재·노무·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하반기 중 품목·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3천억원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 촉진**

* 정부 등이 조성한 母펀드(3천억)를 바탕으로 지자체·민간이 SPC 설립 및 자펀드 결성(최소 총사업비 3조원 규모까지 지원)

□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17개 권역으로 확대(2→17개)**

□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하여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하여 생활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

□ **(내수활성화 입법) '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 제시된 민생안정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재추진**

□ **(소비 보강) 구매 부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3종 패키지” 지원활성화 뒷받침**

- 현재 전기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24년 한시)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치 재입법 추진(한도 100만원)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6년까지 추가 연장

*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대상으로 감면하되, 구체적 감면한도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24.7)

□ **(국내관광 유도)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촉진**

-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 완화*, 민박 표시 의무화 등 규제 합리화(농어촌정비법 개정)
* (현행) 230m² 미만 → (개선) 지자체 자율 결정
- 도시민 주말·체험영농 확산을 위해「농촌체험형 쉼터」시행(12월)
-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연면적 33m² 이내)할 수 있도록 허용
-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 발행

□ **(투자·수출 촉진) 계획된 시설투자 자금지원(52조원) 중 27조원을 하반기에 공급하고, 유망국가·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무역금융 192조원 집중 지원**

- 「투자 익스프레스」를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연내 발표

④ **<잠재리스크 관리>**을 위해서는

□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면서, 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 강화**

* (정상 사업장)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 시정 유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PF정상화펀드(1.1조원), LH 사업장 매입(3조원) 등 정상화 지원

□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마련·발표**

-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 추진
-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촉진

- 부동산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
-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24년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 추진
 -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9월) 등 DSR 규제를 점진적 내실화·확대하고,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 주담보 대출의 장기·고정금리 취급 기반 조성
- 빅데이터(신용카드 결제액 등)·AI 모형 등을 활용하여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24.下~)

< 주요 정책 캘린더 (아래 pdf 파일 수정 요망) >

주요 정책과제	부처	시기
1. 소상공인·서민 지원		
■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	중기부, 고용부, 금융위	7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추가공급	중기부	7월
■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축소	중기부	9월
■ '25년 주요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이상 확대 편성	기재부	9월
■ 새출발자금 제도개선 관련 금융권 협약 개정·시행	금융위	9월
2. 물가안정·생계비 경감		
■ 51개 농산물·식품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기재부, 농식품부	7월
■ 마늘·양파·건고추 14천톤 신규 비축	농식품부	7월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농식품부, 해수부	7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	기재부, 복지부	7월
■ '24.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부	7월
■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금융위	7월
■ 제품 주요정보 변경시 소비자 고지 의무 부과	공정위	8월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24.12월 한시)	고용부	8월
■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 20% 추가 인하	농식품부	9월
■ 한우·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30~50%) 행사 개최	농식품부	9월
■ 상생입대인 제도 적용기한 연장	기재부	9월
■ 「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 발표	기재부	3분기
■ 취약계층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 시 응시수수료 부담 경감	법제처 등	3분기
■ 김 신규 양식장(2,700ha) 개발	해수부	10월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 다양화	농식품부	12월

주요 정책과제	부 처	시 기
■ 결혼 서비스 가격 조사 및 공개	기재부, 공정위	12월
■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 재추진	과기부, 방통위	12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 완화	기재부	12월
■ 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 적용 기한 연장	기재부	12월
■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세제혜택 적용기한 연장	기재부	12월
■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 대한 청약저축 세제지원 확대	기재부	12월
3. 건설투자 등 내수보강		
■ 민생안정 과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	전 부처	7월
■ 농어촌 민박 관련 규제 합리화	농식품부, 해수부	3분기
■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 확대	기재부	12월
■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발굴 지속 추진	기재부, 행안부, 금융위	12월
■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위한 「생애주기별 관리전략」 마련	국토부	12월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기재부	12월
■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 재추진	기재부	12월
■ 「농촌 체류형 쉼터」 시행	농식품부	12월
■ 공공주택 사업장 주택도시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	국토부	4분기
■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기재부	4분기
4. 잠재리스크 관리		
■ 부동산 PF 시장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국토부, 금융위	7월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 초반 수준 관리	기재부, 금융위	7월
■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연구용역)	기재부	7월

기획재정부

「'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40개 정부기관 233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2024-06-30

기획재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함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

이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부·처 청 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함

하반기에는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제도의 달라지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 책자는 7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 전자책(YES24·교보·알라딘) 등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7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누리집(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함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됨으로써, 다양한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됨

주요 내용으로는

< 금융·재정·세제 >

①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의 은행간 거래 직접 참여 허용 및 개장시간 연장**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24.7.1.)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 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

**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② 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안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24년 하반기)

*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 예정(하반기 내 최대 5조원 기금 지원)

** 8월까지 사업자 선정(1차), 기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을 20%로 10%p 인하하여 부과('24.7.1이후)

*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

< 교육·보육·가족 >

①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 확대('24.7.1.)

*(등록금 대출)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 1~9구간까지

(생활비 대출)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학자금지원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상환유예)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사유(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②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절차가 간소화* 되어 감치명령 없이도 제재조치** 가능('24.9.27.)

* (현재)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 (개선) 이행명령→제재조치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③ 스톡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 지원('24.7월)

* 피해자의 일상생활 지속을 위해 개별 거주방식으로 원룸·오피스텔 등을 지원(최대 30일)
 ** ('23년) 6개 시·도 → ('24년) 전국 17개 시·도

< 보건·복지·고용 >

- ① **주돌봄자 부재, 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24.6월, 지자체별 상이)**

*(지원내용)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지역) 14개 시·도(122개 시·군·구)

-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주 최초 10시간까지 확대(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24.7.1.)**

*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③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 가 기존('23년) 3개소(서울,부산,대전)에서 14개소를 신설하여 총 17개소로 확대(12월까지 순차 추진)**

* 지역 내 중독자 발굴, 사회복귀서비스 지원, 의료서비스 연계, 회복지원가 양성, 재활교육 등

< 문화·체육·관광 >

- ① **미술 분야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이 처음 시행되어, 미술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24.7.26.)**

* ('24년 시행) 지원 근거 마련(작가 권익보장 및 소비자 보호), 공공미술 은행 도입
 ('26년 시행) 미술 서비스업 도입 및 공정한 시장거래 의무 부과
 ('27년 시행) 재판매보상청구권('추급권', 창작자 권리보장) 도입

- ②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 인하*('24.7.1.)**

*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는 면제

- ③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및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현행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24.7.1.)**

* 면제 기준연령 : (당초)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 면제 / (개편) 12세 미만 면제

< 환경·기상 >

- ①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24.7.1.)**

*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자동차

- ②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μ g/ m^3 초과)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24.11월)**

* (기존)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예보권역)
 (확대)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전국(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

- ③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24.12월)**

* (7개노선) 중부내륙선, 서해안선(기존), + 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대전~통영선 추가

** (3개 내비게이션) 티맵, 카카오내비(기존) + 아틀란 / (관측망) 55개소(기존) → 259개소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① 전기사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그간 전기요금 3.7%의 요율로 부과되었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하여 총 1.0%p 인하('24.7.1 이후 전기요금 분부터)

* (1차) '24.7월, 0.5%p 인하(3.7%→3.2%), (2차) '25.7월, 0.5%p 추가 인하(3.2%→2.7%)

②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및 경영상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24.7.10.)

* - (연접 입주기업체 산업용지 임대 허용) 연접한 입주기업체가 제조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업용지의 일부를 연접한 입주기업체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제한 예외 확대) 입주기업체가 합작법인에 산업용지 등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산업용지 처분제한의 예외로 인정

-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산유동화 허용) 비수도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유동화 할 수 있도록 허용

③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 초과시 적용되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24.8.21.)

-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개별 기업에 유예 1회만 적용, 상한기준을 초과하거나 대기업계열사 등에 포함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날 경우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

< 국토·교통 >

① 1기 신도시(5곳①)를 대상으로 선도지구②공모 시행(6월), 제안서 접수, 평가 등을 거쳐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③(공모 6월, 선정 11월)

①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② 지역주민 동의여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의 필요성,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

③ 추진일정 : 공모 지침 확정·공고(6.25) →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9월) → 평가 및 국토부 협의(10월) → 지자체가 선도지구 최종 선정(11월)

②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24.7.17.)

*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③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 개통('24년 하반기)

< 농림·수산·식품 >

①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최대 16년(최초7+연장9)으로 확대('24.7.3.)

* (기존)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간 설치·사용 가능
(개선) 16년(7+3+3+3), 「농지법시행령」시행('24.7.3)

- ②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 최소화('24.10월 예정)

*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시 반경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일괄 살처분 실시

- ③ 수산물 물가안정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수산물 품목선정*, 거래규격을 마련하여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개시('24.7.1.)

* ('24~'25) 냉동·건어물 중심 → ('26) 선어류까지 확대

< 국방·병무 >

- ①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24.7.10.)

* 기존에는 병역·입영 판정검사시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는 경우 선별 검사 실시

- ②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 출시('24.7월 중)

*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 기준

** (혜택)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
(금융사)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 ③ 입영 전,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24.7월)

* ① 지원센터 : (기존)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확대) 11개 지역(기존 + 울산, 창원, 의정부센터)

② 프로그램 : 1:1 병역진로상담, 입영 정보제공, 군 적응 체험·교육

< 행정·안전·질서 >

- 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발급('24.9.30.)

*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 ②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24.12.27.)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으신 분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

- ③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24.7.3.)

* ① (긴급조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② (피난명령)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③ (거짓신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기업-정부 맞손,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 발족

- 물류정책·생활물류·화물운송·스마트물류 등 분야별
핵심과제 논의

2024-07-05

국토교통부는 물류기업·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물류기업 지원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4.23)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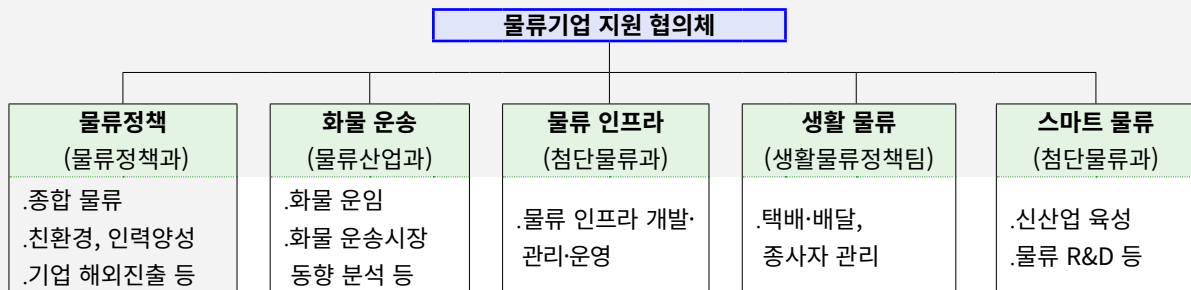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는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 소통 창구로서, 화물운송·생활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교류를 위해 물류정책, 화물운송, 물류 인프라, 생활물류, 스마트 물류 등 5개 분과로 구성하고 분과 회의는 수시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임

< 분과별 주요 논의 분야(예) >

- ① **(물류정책)** 물류 디지털 전환, 친환경 물류, 물류 전문인력양성, 물류기업 해외진출 등
- ② **(화물운송)** 화물 운임, 화물운송 시장동향 및 수급방안 등
- ③ **(물류 인프라)**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 물류시설 관리·운영 활성화
- ④ **(생활물류)** 택배 및 배달업 종사자 지원 등
- ⑤ **(스마트 물류)** 물류 신산업 육성, R&D 기술개발 지원 등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협의체 운영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 ② 택배 인력 수급 및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 친환경 물류 등 향후 정책 중점 추진 방향 논의
- ③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는 물류기업 및 화주(貨主)기업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매주 수렴하여 분과별 회의 시 논의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개선방안 7.1일부터 시행

- 기술기업을 충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개선
-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 강화
- 기술금융 본래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테크평가 지표 개편

2024-07-01

지난 '24.4.3.(수)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 대상부터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까지 기술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5대 추진과제 및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함

<「기술금융 개선방안」 주요 과제>

5대 추진과제	10대 세부과제	필요 후속조치
기술금융 원래의 취지 강화	① 우대금리의 명확화 ② 신용대출 확대 유도	테크평가 개편
평가의 독립성 강화	① 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간 균형과 견제 ② 은행에 대한 행위준칙 마련 ③ 은행의 양적확대 경쟁 유인 방지	품질심사평가 개편 신용정보법 개정 기술신용평가 개편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① 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개편 ② 관대한 평가를 방지하는 기준 마련	기술신용평가 개편
사후평가 강화 (품질심사평가)	① 기술신용평가사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② 평가서 평가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	품질심사평가 개편
규율체계 정비	① 신정법에 규정된 행위규칙 정비	신용정보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

* 기업의 기술(T)과 신용(CB)을 평가(현재 6개 평가사 및 10개 은행에서 평가중)

- 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하여 기술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토록하여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AI기술을 활용하여 등급판정 가이드 제공
-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 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 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

②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

* 은행 및 평가사에서 평가한 기술신용평가의 품질을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평가

-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 강화

- 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同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환류체계 강화
- 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하도록 하여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 강화

③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강화되도록 테크평가* 제도 개선

*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신정원과 금감원에서 평가하여 신·기보 출연요율에 반영

- 테크평가 지표에 은행의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의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 강화
- 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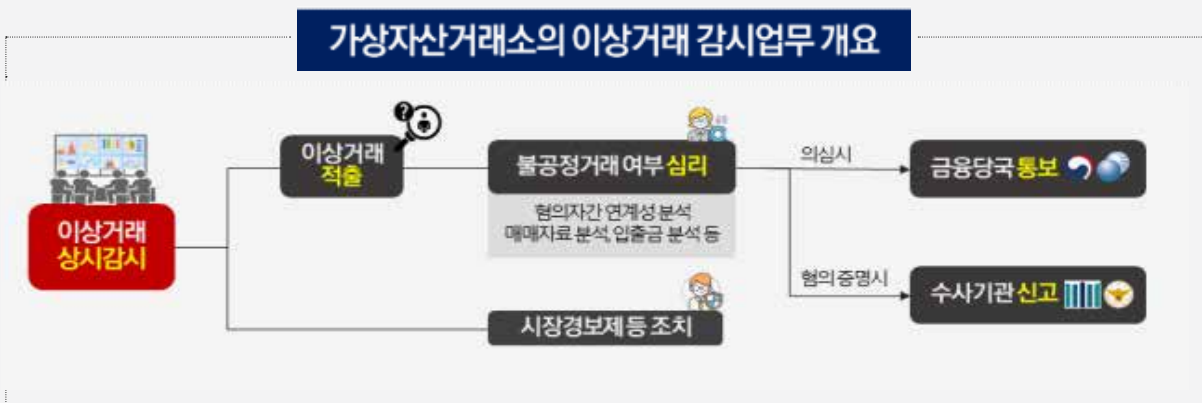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구축 완료

-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24.7.19.)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 본격 가동

2024-07-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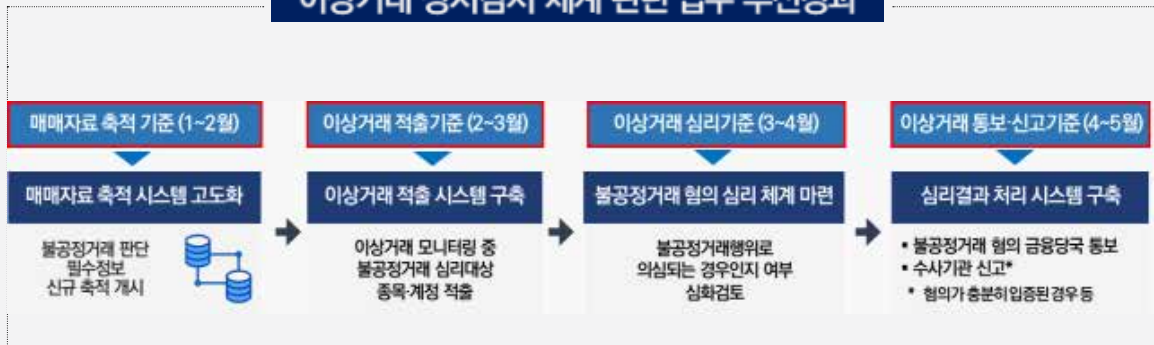
'24.7.19.「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고,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여야 함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함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다음과 같이 준비함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 관련 업무 추진경과



주요 내용으로는

①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구축

- (과거) 각 거래소마다 축적되고 있는 자료 양식이 제각각이었고,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고 있었음
- (개선) 이상거래를 탐지하여 적출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각 거래소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함

< 추가된 주요 매매정보 축적 항목 >

- ① **호가정보**: 매매주문제출 시점의 10호가까지 **호가·주문잔량** 정보로서, 혐의계정의 매매주문이 얼마나 시세를 변동시켰는지 **확인** 가능



- ② **매매주문매체정보**: 매매주문 IP, 주문매체유형 등 정보로서, **혐의계정과 연계성이 있는 계정을 찾는**데 유용하게 사용됨



②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구축

- (적출기준) KRX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 수차례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촘촘하게 이상거래를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시세조종 의심 이상거래 적출 모형 예시>

우선, ①가격·거래량이 정상범위를 벗어난 **종목·기간**을 탐지하고, ②동 종목·기간에서 **주문·체결관여율** 등이 **높은 계정**을 적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시스템 구축) 위 적출기준에 따라 5대 원화거래소 및 주요 코인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고, 일부 거래소는 파일럿테스트를 통해 임계치 조정 중에 있음

*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으로 99.9% 해당

③ 이상거래 심리체계 구축

- (심리기준) 적출된 이상거래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심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모범사례도 제시함

<시세조종 의심 이상거래 적출 모형 예시>



- (상시감시조직 구성·운영)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이상거래 적출·분석·심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주요 거래소는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모의 심리업무를 진행 중임

<A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 조직 및 인력(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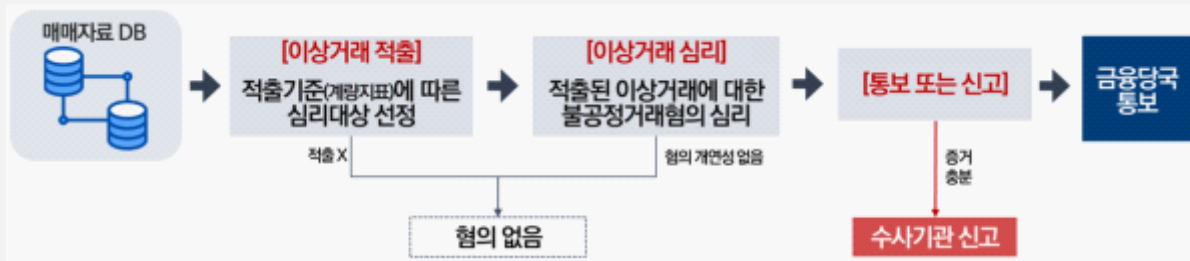


④ 혐의사항의 통보·신고체계 구축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 개선

- (통보·신고기준) 금융당국에 통보(또는 수사기관 신고)해야 하는 혐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

* 부당이득, 매매금액 등 통보대상의 계량적 기준 및 사회적 물의야기 또는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저해 등 전반적 고려사항 제시

< 이상거래에 대한 처리 프로세스 >



- (보고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과 5대 원화거래소 간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 모든 거래소 상시 감시 부서와 핫라인 구축 등 긴밀하고 신속한 보고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상거래의 적출부터 통보까지 모의 테스트를 완료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산업통상자원부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01 시행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됨

이에 따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와 분할로 인해 부여되는 국제등록번호를 국제상표등록원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관련 서식에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30조제1항제2호하목 신설, 제30조제1항제2호거목 신설, 제37조제1항제3호파목 신설, 제37조제1항제3호하목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10 시행 예정
---------	--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운영,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내용,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 및 제3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7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부문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②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운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으로 하고, 전략회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둠

③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 (제10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래자동차 기술 수준의 조사, 개발된 미래자동차 기술의 평가 및 실용화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의 사업을 하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④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요건 및 유효기간 (제12조)

-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미래자동차 부품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미래자동차 기술 관련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19조)

-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을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⑥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규제개선 등 (제25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규제합동개선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합동개선반으로부터 건의받은 규제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02 시행

(다만, 별표 8 제2호커목
및 터목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 예정)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나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에 대해 실시하는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3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에 따른 표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낮은 회수율로 발생하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중 "평판형"을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48조제3항제1호, 별표 6 제7호, 별표 8 제2호거목)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10 시행 예정

시·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구역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하나의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 발급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운행지구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8조제3항 등)

국토교통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14 시행 예정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 예정)

드론 정보체계의 정보 범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드론을 이용한 국민들의 취미·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드론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76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법률 제20295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

이에 따라, 드론 정보체계에 포함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범위 및 제공 방식과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지정 및 변경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드론 정보체계에 포함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범위 및 제공 방식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 드론 정보체계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고시되는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안처리하여 제공하도록 함
- ② **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제12조의2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의 지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드론공원 운영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하며, 드론공원 인근 주민과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주지 않는 지역을 드론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③ **드론공원의 지정·변경 절차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 시·도지사 등이 드론공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서에 드론공원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 드론공원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드론공원 지정에 관하여 인근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공원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드론공원의 명칭·위치·면적·고도 및 해당 드론공원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면제 또는 간소화되는 조종자 증명 등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01 시행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자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양폐기물관리업 중 해양폐기물수거업 또는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에 등록하려는 자는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16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3조의2 신설, 제25조제1항제1호다목 등)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10 시행 예정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 예정)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이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조, 제2조, 제2조의5 신설, 제2조의6 신설, 제2조의7 신설, 제11조의3, 제11조의18 신설, 제11조의19 신설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7-03 시행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915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

이에 따라,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수행되는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4조의2 신설, 제10 조제2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2항제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2024-07-03 시행
(다만, 별표 3 제2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

이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식품 등의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로서 그 허용오차가 10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이 0인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3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7-03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식품접객업소 등 관련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16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

이에 따라,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권고에 따라 표시·광고의 변경 조치를 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를 간판, 메뉴판 및 포장재를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8조의3 신설, 제8조의4 신설, 제12조제1항, 제13조 등)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8-07 시행 예정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가 소속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며, 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의무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2042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손해사정사가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방법 등 교육기준 및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관련 준수사항 (제96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업무위탁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선정기준, 손해사정업무의 위탁 범위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각 보험회사는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이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선정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② **손해사정사 등의 교육기준 (제96조의4 및 별표 7의2 신설)**

- 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소속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게 2년마다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개인인 손해사정업자 및 그 보조인은 2년마다 손해사정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손해사정사 및 그 보조인에 대한 교육과목은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등으로 구성되고,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③ **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사항 (제98조제5항 신설)**

- 손해사정업자는 재무, 손익 등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함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03. ~07.15.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 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7조의2 신설)

-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 (안 제7조의3 신설)

- 상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③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 (안 제10조)

-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④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 (안 제24조제1항제2호)

-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⑤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 (안 제29조제7호)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⑥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 (안 제81조제1항, 제81조제4항 신설)

-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⑦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 (안 제101조)

- 등기관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 문의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tel:02-2110-3164)

산업통상자원부

대외무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05.
~08.14.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되지 않은 품목·기술에 대해서도 이를 전략물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기능이 한정된 전략물자관리원이 여타 민감 품목·기술의 통제를 담당할 수 있도록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역할을 강화하며,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등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20319호, 2024. 2.20. 공포, 8. 21. 시행)됨

이에 따라 전략물자의 지정 범위,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략물자 지정 근거 추가 (안 제32조제8호)

-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전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 공조가 필요한 경우를 전략물자 지정 근거로 추가함

②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 추가 (안 제46조)

-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에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을 추가하고, 법 제5조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무역제한 특별조치 정보제공 기능은 종전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시행령으로 이관하고자 함

③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안 별표4)

-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의 사후관리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신설되거나 과태료 부과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각 과태료 처분 사유별 위반의 횟수에 따른 부과 금액기준을 정비함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 \(전화: 044-203-4836, 팩스: 044-203-4707\)](tel:044-203-4836)

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01.
~08.12.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에 대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시켜 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특별유족인정(법 제14조), 구제급여 지급결정(법 제16조제2항), 수급권 변동신고(법 제43조), 구제급여 일시증지(법 제45조) 주체 또는 신청 대상이 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하위법령 변경 (안 제10조, 제11조, 제38조, 제43조)
- ②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폐지(법 제8조)되고, 구제급여 지급 여부 결정이 기술원에서 위원회로 이관(법 제16조)되어 변경된 구제급여 심의·결정 방식을 규정 (안 제12조)
- ③ 법 제4장 제명이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서 “재심사청구”로 변경(석면피해구제 심의체계 ; 3심제 → 2심제)됨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 변경 (안 제29조, 제34조)
- ④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법 제36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법 제39조) 폐지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재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법, 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 삭제 (현행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37조)

※ 문의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tel:044-201-6818) (전화: 044-201-6818, 팩스: 044-201-6823)

환경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7.01.
~08.12.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에 대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시켜 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석면피해인정 등의 주체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법 제6조제3항)되어 인정 결정 통지 관련 하위법령 변경 (안 제4조, 제4조의2)

- ② 석면피해의료수첩(법 제6조), 석면건강관리수첩(법 제48조) 교부·등록 등의 주체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에서 위원회로 변경 (안 제5조, 제8조, 제9조, 제35조, 제36조, 제39조)
- ③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비용 지원(법 제6조제8항 및 제6조제9항),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에 대한 건강검진(법 제48조제3항)이 각각 기술원, 환경부에서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조항 변경 (안 제10조, 제37조)
- ④ 특별유족조의금 등 구제급여 신청(법 제6조제1항),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법 제7조제3항), 특별유족 인정(법 제14조제1항), 미지급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의 지급(제17조),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법 제19조제1항) 및 수급권의 변동 신고에 대한 주체 또는 대상이 기술원에서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하위법령 변경 (안 제11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 ⑤ 석면피해판정위원회(법 제8조),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법 제39조) 폐지에 따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 판정위원회의 운영,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자격기준 등에 관한 조항 삭제(현행 제12조, 제13조, 제26조, 제27조)

※ 문의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mailto:환경부_환경피해구제과) (전화: 044-201-6818, 팩스: 044-201-6823)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01.
~08.12.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 조사, 심의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구성 인력 요건을 추가 (안 제37조의3)
- ② 피해구제 기능 개편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 제출처 및 구제 급여 지급중단 결정 주체를 환경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 (안 제37조의5, 제37조의13)
- ③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 위탁 범위를 마련 (안 제39조)

※ 문의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mailto:환경부_환경피해구제과) (전화: 044-201-6818, 팩스: 044-201-6823)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03.
~07.11.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종사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17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 및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상한선 확대 (안 별표 2)

- 폐차종사원 신분 표시 및 교육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00 300만원)
-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폐차 요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 (지연기간 10일 이내 200만원, 이후 20만원씩 일할 가산, 최대 1,000만원)
-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하여 처벌받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100만원)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http://www.kmtr.go.kr) (전화: 044-201-3857, 팩스: 044-201-5587)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7.05.
~09.05.

국내 원료의약품의 수입 현황과 의약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약품 품목허가신청 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을 간소화하고,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으로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를 국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간소화하여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적합판정의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시 현장조사 외의 방법으로 확인·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운영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에 필요한 제출자료 개선 (안 제4조, 제48조의2 및 별지 제4호서식)

- 품목허가 신청 시 요구되는 기존 GMP 평가 11종 자료를 제조소 총람 등 4종 자료로 개선하였으며 특히 수입 원료의약품(생물학적제제등은 제외)의 경우 국제 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간소화함

②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 개선 (안 제15조, 제17조, 별지 제16호 및 제17호서식)

- 현행 원료의약품 등록 요건으로서 생산국 제조증명서 또는 GMP 평가 자료 제출을 국제 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간소화함

③ GMP 적합판정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체계 개선 (안 제48조의4)

- 천재지변 뿐만 아니라 제조소 내 중대한 변경 이력이 없는 등을 사유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이외 방법으로 확인·조사하여 GMP 적합판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확인·조사 체계를 개선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21, 팩스: 043-719-2606)

3. 법률 발의(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07-04 발의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00분의 27.9 이하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초과한 이자 부분은 각각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 제한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하향 조정하며,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현행 “연 25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안 제2조제1항)
- ②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이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여, 채권자가 그 원본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2조제3항·제4항·제6항)
- ③ 이자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미등록대부업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금융업 및 대부업도 이 법에 따른 이자 제한을 받게 됨 (안 제7조)
- ④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3항)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1인)

2024-07-01 발의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3)

또한,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내총생산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하였으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보호한도는 그대로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2항)

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2024-07-03 발의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한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래,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2021년 기준으로 2001년의 2.7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예금자 보호 및 금융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제2항 및 제32조제5항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2024-07-02 발의

현행법은 동의를결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에서 적합한 시정방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1,000억원 규모의 동의를결안을 확정했으나 동의를결이 개시된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동의를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의를결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89조 및 제124조)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2024-07-02 발의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07-02 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사고가 이용자의 과실이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기술적 문제로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을 이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적인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현행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사고의 원인을 보다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2024-07-03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함. 여기서 자기자본 요건은 등록대상자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도지사 등록대상인 법인의 경우 5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자인 경우 1천만원 이상인 한편, 금융위원회 등록대상은 3억원 이상이고,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불법 대부업자들의 범죄 행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들은 법정 최고 이율(연 20%)의 250배에 달하는 5,000%의 폭리를 취하거나 고금리 사채 미상환을 빌미로 나체사진을 받아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인권유린적인 불법 추심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부업자 등록제도 중 최저 순자산액 기준을 참고하여 도입함으로써 불법·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순자산액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가 등록 이후 자산보유액을 3억원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금융이용자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3조의5 및 제13조)

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07-04 발의

우리나라의 이자제한 제도는 사채시장의 양성화 및 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합법적인 대부업에는 고금리의 보장 필요성에 따라 이원화하여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 퍼센트를,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00분의 27.9 이하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제한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 초과한 이자 부분은 각각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당초 입법 목적대로 사채시장의 양성화는 두드러졌지만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낮은 신용등급으로 사채시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자립할 수 없을 정도의 고금리에 허덕이게 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함으로써 서민계층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1조 및 제15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2024-07-01 발의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의무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2항제2호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2024-07-01 발의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더 많은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가격을 한정하지 아니함)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여력이 있는 주민을 유입시켜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1조의2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6인)

2024-07-01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두어 투자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시설이 구축 될 토지 및 건축물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데 반해 우리 현행법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경쟁국은 대비 투자금 조달 및 원가경쟁력 열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미래 반도체 기술 확보 및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 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추가공제의 세액공제율도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 등)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제대상 자산에 추가함 (안 제24조제1항제1호나목)
- ②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함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 ③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가공제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함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48인)

2024-07-03 발의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인력개발과 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조 시설 등 사업화시설에 관한 투자에 대하여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법에 따라 연구개발시설 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 투자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0조, 제13조의3제3항 및 제24조)

기획재정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9인)

2024-07-02 발의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복권수익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2인)

2024-07-03 발의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주소 등을 납세지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4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23인)

2024-07-02 발의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천문, 항공, 우주, 유전자 등 첨단 분야에서 실험 장비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연구실험데이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양질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공개·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의 구축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음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2018년 국가연구데이터 공유·활용전략을 수립하고, 2019년 연구데이터관리계획(DMP)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 구축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해왔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그 정확한 규모마저 확인되지 못한 채 연구데이터가 잊히거나 소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국가적 손실임

국가자산이자 과학기술의 원천인 연구데이터가 과학자들의 후속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 마련이 필요한 것임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심화 될 연구인력난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연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연구데이터 공유활용체계를 조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데이터센터, 전문연구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더불어 국가연구데이터 공개원칙, 표준화, 품질관리, 보안관리, 활용촉진, 연구자 권리보호, 전문인력 양성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규정들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수많은 연구데이터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연구데이터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로부터 그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의 국가연구데이터 성과를 적절히 보호·관리하여야 하고, 연구자는 그 데이터를 통해 발생한 가치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함 (안 제5조)
- ② 정부는 3년 단위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상호 연계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④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등록·관리·제공·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전문연구데이터센터는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안 제11조)
- ⑤ 국가연구데이터는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연구데이터 플랫폼에 등록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공개 기간 동안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및 공개를 유보할 수 있으며,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함 (안 제13조)
- ⑥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 ⑦ 보안이 요구되는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별도로 분류하여 필요한 보안관리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16조)
- ⑧ 국가연구데이터의 상호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중요성,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18조 및 제20조)
- ⑨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훈련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

새로운 지식·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연구데이터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융합·공동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일찍이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과학기술 연구의 디지털화를 통해 연구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관리계획의 도입,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의 구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하지만, 법·제도적 인프라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체계 확립이 시급함

이에 국가연구개발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을 제정함으로써, 연구개발로 산출되는 연구성과물의 디지털 자산화를 촉진하고, 공유·활용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적 성과와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 (안 제2조제3호)

- 국가연구개발과정에서 생성된 연구데이터 중 관리·활용이 필요한 국가연구데이터의 정의를 연구개발성과의 검증 또는 재현에 필수적인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함

② 적용범위 (안 제3조)

- 국가연구개발 사업 또는 과제 중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 분야, 보안과제,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인 과제 등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과제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함

③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 (안 제13조)

- 연구개발기관이 기관 차원에서 국가연구데이터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저장소의 설치·운영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기관이 연구개발기관의 저장소 설치·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④ 국가연구데이터의 보유 (안 제14조)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보유하되, 다른 법령 또는 연구계약에서 국가연구데이터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

⑤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공개 (안 제15조)

-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를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에 등록·연계하여 공개하되, 다른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함

⑥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 (안 제16조)

- 국가연구데이터는 무상제공 및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유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⑦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안 제17조)

- 연구개발기관에서 공개하는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등록·연계하고 자유롭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⑧ 선도기관 (안 제18조)

-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⑨ 분야별 전문센터 (안 제19조)

- 바이오, 소재 등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를 관리·보존하고 해당 분야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센터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⑩ 분쟁조정 (안 제20조)

-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1인)

2024-07-02 발의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적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수직 계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획득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진입 또는 정당한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선택권 관점에서 합리적 규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요 앱 마켓사업자들이 운영체제, 앱 마켓, 결제방식 등 주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직 계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당화 사유로 들고 있는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앱 마켓, 결제방식,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한 보안성을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의 9제3항 신설),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이용하는 경로, 방식 등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22조의9제4항 신설 등)

아울러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운영체제를 제작 또는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용자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을 통하지 않고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동차 등 다른 단말장치에서 다른 앱 마켓을 통하여 설치한 앱의 구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등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제12호, 제13호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2024-07-04 발의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하 “앱”이라 한다)를 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보편화·일반화되면서 앱을 유통하는 앱 마켓이 이용자와 앱 개발사를 연결하는 앱 생태계 전체의 관문으로 성장하였으며, 앱 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진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관련 생태계를 관장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부상하였음

이에 따라 앱 마켓 시장의 유효경쟁 확보가 모바일 앱 생태계 전체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 정책 과제로 대두하였음. 우리나라는 2021년 인앱결제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유럽연합의 EU집행위원회도 디지털마켓법(Digital Market Act)에 합의하는 등 모바일콘텐츠의 공정한 유통을 위한 법제도 수립이 가시화되고 있음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도 앱 마켓사업자가 자사 앱 마켓을 통한 매출액, 다운로드 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 앱의 순위가 해당 앱의 매출이나 다운로드 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앱 개발사는 매출액 또는 다운로드 수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앱 마켓에만 입점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앱 마켓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는 다시 앱 마켓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른 앱 마켓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시장경쟁 제한과 이에 따른 이용자 편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나아가 일부 게임사업자들은 과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바일콘텐츠를 개발하여 매출액 기준 순위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전한 모바일콘텐츠 이용문화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도 발생함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앱에 대하여 매출액, 다운로드 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22조의11, 제27조제1항제3호의6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권철승의원 등 15인)

2024-07-04 발의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시대 산업·경제 및 사회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산업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인간의 기본권 침해, 편견이나 허위 정보의 확산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발전 및 산업진흥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추진과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검·인증 등의 규제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인공지능의 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및 고위험 인공지능 등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③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안 제6조)
- ④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규정함 (안 제8조)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 정책과 계획의 수립·추진, 각종 인공지능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⑥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업과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 ⑦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및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 ⑨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분야 창업과 인공지능 융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및 제15조)
-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간 중심의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립하도록 함 (안 제18조)
- ⑪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안 제19조 및 제20조)
- ⑫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발과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함 (안 제21조)
- ⑬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의 확인 절차 및 고위험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 등의 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2조 및 제23조)
- ⑭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 (안 제27조)

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4인)

2024-07-02 발의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옥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옥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집회에서는 옥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벌어짐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이에 누구든지 광고물에 깃발, 휘장 및 문양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안 제5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2024-07-01 발의

정부는 2020년 9월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2023년 2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각각 수립하고, 그린바이오 산업화 촉진과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음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 중 종자,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은 존재하는 반면 동물용의약품과 미생물의 경우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동물용의약품과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의 경우 국내외 반려인구 증가, 관련 시장규모 증가 등으로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지만,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예산 지원이나 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및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동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등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용의약품등 기업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 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8조)**
-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안 제9조)**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
-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동물용의약품등 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외국의 기관·단체 등과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용의약품등 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등 12인)**

2024-07-02 발의

최근 기후변화 및 국제정세 불안으로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농업인의 경영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음. 농업인의 농산물 등의 판매 수입은 줄어든 반면 농업에 사용되는 농약·비료·전기·유류 등 필수농자재에 지출되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농업기계 구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 그치고 있어 농업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농업소득은 농가의 경영위기 방지, 귀농을 통한 농업종사자 유입, 청년농 육성 등 농촌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안 전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농가의 경영비 상승은 소득 저하로 이어져 2022년 농가 소득은 평균 4,625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농가 소득 중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전년대비 26.8%나 감소하였음

이에 정부가 필요한 경우 필수농자재 및 일부 농업기계 구입비를 지원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경영과 농업 생산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4조)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수농자재 또는 농업기계의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1항)
- ④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필수농자재의 품목, 지원액 등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농업기계의 종류, 지원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⑤ 필수농자재 품목, 지원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6조)
- ⑥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급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경영체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

2024-07-04 발의

현행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움.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폭우·폭염 등 극한 기후가 반복되어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여기에 더해 정부가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 폭락 시에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원가 보장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종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 (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 및 기준가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③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둠 (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안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8인)

2024-07-01 발의

현행법은 국가·경제안보에 중요한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으로 규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중국·대만 등 주요국은 전력, 용수, 도로, 폐수 등 산업 기반 시설을 국가 기본 시설로 보고 정부가 건설하거나,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용수, 전력 등 산업기반시설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어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5년 단위로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에 관련 계획의 보고 의무가 없어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 등 계획과 법률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전략기술의 유출 및 관리 부실 등이 발생할 경우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재로 유출과 관리 부실에 대한 국회 차원의 확인과 감시 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3항 및 제45조의2 신설)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첨단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업기반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70퍼센트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안 제20조제3항 신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안 제45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4-07-02 발의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출점 예정지 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변경하려는 자이고 이 상권영향평가서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검토하므로 기초자치단체와 인접한 광역적인 범위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대형마트·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점 지역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여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4인)

2024-07-03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규제완화 및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외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구체적인 지원금 환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미비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각종 혜택을 수혜 받았음에도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심의 및 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금을 국세 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 ②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함 (안 제21조제7항·제8항 및 제27조제1항제11호 신설)
- ③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함 (안 제21조의2 신설)
- ④ 폐업 사전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폐업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28조제5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2024-07-03 발의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대와 함께 충전시설도 증가하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단계에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 대응 등 해당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이 충전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설치수량·충전규격 등을 신고하도록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전기충전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의2 신설 및 제52조제2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2024-07-03 발의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본 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철강 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소재이지만, 향후 대체재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임. 반면, 세계 각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 CBAM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음

이에 철강을 국가첨단전략산업과 기술로 지정·육성하여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확실한 기반을 다지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고시되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와 함께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법에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1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김태년의원 등 48인)

2024-07-03 발의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고, 이를 육성·보호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보호조치, 특화단지 지정 및 기반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국, 중국 등 주요국 간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기술보호조치 등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적 성격이 강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미래첨단기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반도체기술주권을 확립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3조)
- ③ 정부는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5조)
- ④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위원회를 둠 (안 제8조)
- ⑤ 정부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의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안 제9조)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반도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도체 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0조)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인·허가권자에게 인·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 (안 제13조)
- ⑧ 반도체 특구 관리주체 등은 첨단 기술 분야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음 (안 제14조)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 (안 제16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22인)

2024-07-04 발의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고 있음.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면서 임대료를 반영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조치를 한 사례가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계속되고 있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21조제1항제17호의4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2024-07-04 발의

최근 지구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발표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음. 이와 함께 환경부 역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열에너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수열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근거한 수열에너지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정의에 해수(海水)와 하천수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수열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임** (안 제2조 및 제2조제2호아목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3인)

2024-07-01 발의

현행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규명된 원인을 근거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중대재해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서 조사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음. 또한, 현행법에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의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관련 보고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산업재해는 해당 사업장은 물론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다른 사업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볼 것임. 이를 고려할 때, 조사보고서의 비공개는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책임소재 규명에 이르지 못하고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그칠 우려도 있음

이에 **중대재해의 원인을 조사·분석한 중대재해 조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6조제1항 및 제2항 등)

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2024-07-0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할 때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도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불받은 수급인이 해당 건설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 등을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로 도급인이 확인하게끔 규정되어 있어 건설근로자는 이해당사자임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비용의 구분지급·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수급인·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안 제7조의3제4항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의원 등 12인)

2024-07-04 발의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급휴가 산정 때 불이익을 받고 있음. 합계출산율이 2018년 1.0명 아래로 감소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원인 중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함

한편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따르면, 임신기간 13주까지를 초기, 27주까지를 중기, 28주부터 후기로 보고 있는데, 초기에는 유산 위험, 후기에는 조산 위험이 있어 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포럼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였던 조산율이 2021년 9.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산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임

이에 근로자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사용할 때도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3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해, 유산과 조산의 위험으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안 제60조제6항제4호·제5호·제6호 신설 및 제74조제7항)

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위성곤의원 등 24인)

2024-07-04 발의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음. 이와 함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각광(脚光)받고 있으며 이를 개발 및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범정부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한편 현행 「물산업진흥법」은 물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법에 명시된 물산업에 대하여 관련 기술 및 창업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수자원 활용 기술 향상 등 그 실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물산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 안에 포함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의 초석을 더욱 견고히 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타목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2024-07-01 발의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임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현재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이 없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정비 비용의 국고보조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 (안 제3조)
-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⑤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⑦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보관·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⑧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 (안 제13조 등)**
- ⑨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14조)**
- ⑩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양수, 상속, 휴업·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 ⑪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 (안 제25조)**
- ⑫ 국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
-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2024-07-01 발의

현행법은 기본계획 성격인 도시재생전략계획과 시행계획 성격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모두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과 특정 도시에서의 인구 쏠림 현상 등으로 쇠퇴도시의 침체가 가속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본계획·시행계획 단계에서 동일한 절차를 중복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절차로 작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방식을 공청회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대신에 간소화된 방식인 주민 공람 절차로 변경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과 아울러 쇠퇴하는 도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3항 등)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2024-07-01 발의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을 차단구조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승강기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왔고,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고층화에 따른 승강기 운행속도의 증가로 인하여 승강기소음에 관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에는 승강기소음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를 추가함으로써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문제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제1항제2호)

국토교통위원회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4-07-01 발의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를 잇는 총연장 약 330km의 대규모 국책 건의사업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지방소멸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중부내륙을 횡단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수년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중부권 동·서간 교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

이에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여 중부권 동·서 교류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부경제권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자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4조)
- ③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 (안 제5조)
- ④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하도록 함 (안 제6조)
- ⑤ 기획재정부장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⑥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실시계획의 작성·승인, 사업시행자 및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등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 ⑧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13조)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 ⑩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2024-07-02 발의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 부과됨

그런데 해당 시·군·구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과중한 부담금이 부과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필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필수 공공시설 설치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별표 제3호)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3인)

2024-07-03 발의

현행법은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 관계법률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 인프라가 고도화되고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와 감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건축물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기술사를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여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전문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화·전문화되어 가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시공의 안전성과 품질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7조제1항제1호)

국토교통위원회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2024-07-03 발의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무상교통 정책을 K-패스 도입 등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고, 이는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대한 부담을 나눌 필요가 제기됨

한편, 도시철도운영자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일 경우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임

이와 같이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2호, 제22조제7항,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22인)

2024-07-03 발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2024-07-04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혁신도시 외의 지역에 대한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29조제1항 단서 삭제 등)

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2024-07-04 발의

현행법은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친육아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2024-07-05 발의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전업근

무 수준으로 보장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이 규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서울 외의 지역에도 이 규정의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서울에서의 도입 효과,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먼저, 1주간 40시간의 고정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운송수입이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를 상회하여야 하나, 한국교통연구원의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23.7)에서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운송수입이 1주간 40시간의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에 미달하여 적자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공제하는 등 현행 규정을 위법하게 운용 중인 것으로 서울시의 점검 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 이 규정을 준수한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적자 누적으로 인해 휴업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또, 서울시 운수종사자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종사자가 현행 1주간 40시간 이상의 월급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운송수입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하면, 서울보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운수종사자의 측면에서도 이 규정은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고성과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킴으로써, 배달업, 택배업 등 성과기반의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으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이탈하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과거보다 성과급이 감소하여 근로해태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

또한, 1주간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전업근무를 의미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은 이 규정에 의해 파트타임, 격일 또는 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체계가 금지되는 실정이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을 제한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근로감독 없이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운영하여 영업실적에 비례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11조의2 단서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상임(특별)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7/9(화) 14:00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기재위	전체회의	7/8(월) 11:00	-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자료제출 요구의 건 -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전체회의	7/9(화) 10:00	- 한국은행 등 소관 업무보고
교육위	전체회의	7/12(금) 0:00	- 교육부 등 소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행안위	전체회의	7/11(목) 0:00	- 업무보고
문체위	전체회의	7/8(월) 11:00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농해수위	전체회의	7/9(화) 11:00	- 간사 선임의 건 - 소위원 선임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 법안 심사 -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업무보고
	전체회의	7/10(수) 0:00	- 해양수산부 등 소관 업무보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7/9(화) 09:30	- 간사 선임의 건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7/9(화) 14:00	- 법안 심사
	환경법안소위	7/11(목) 0:00	- 법안 심사
국토위	전체회의	7/10(수) 0:00	- 국토교통부 등 소관 업무보고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7/8(월) 07:30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창립총회 및 연속 세 미나 -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전략	전진숙·이수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실
	7/8(월) 14:00	벼랑 끝 응급의료, 그들은 왜 탈출하는가?	이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8(월) 14:00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	이용우·김교흥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7/8(월) 14:00	접경지역 내일포럼 출범식 및 1차 토론회 - 접경지역 성장성 및 활용가능 자원 발굴	이기현·이양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9(화) 07:30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세미나 시즌1 2회차 - 기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김남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7/9(화) 10:00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창민·신장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7/9(화) 10:00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가치 재정립 토론회	김장겸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7/9(화) 10:00	서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실태와 과제	김윤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9(화) 11:00	저출생·축소사회 대응 포럼 창립총회	박상혁·백혜련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9(화) 14:00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김태년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9(화) 14:00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전략 정책토론회	유용원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9(화) 14:00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신장식·박홍근· 진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실
	7/10(수) 10:00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 주거권	황운하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강당
	7/10(수) 10:30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0(수) 14:00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공공병원 기능회복과 역량강화	김윤·박주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7/10(수) 14:00	노회찬 6주기 추모 심포지엄 -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한창민·김영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0(수) 14:00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소병훈·김선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7/10(수) 14:00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 토론	이정문·문진석· 이재관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7/10(수) 14:00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주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7/10(수) 14:00	우주항공산업발전포럼 창립총회 및 스페이스 복합도시 건설 방안마련 정책토론회	서천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7/10(수) 18:30	노동입법 세미나 5강 -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	김주영 의원실, 민주노총 등	의원회관 306호
7/11(목) 09:00	국가 미래비전 포럼 - 창립총회 및 전문가 초청 특별강연	조정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7/11(목) 10:00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시추개발, 지진 위험은 없나?	임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7/11(목) 13:30	노회찬 6주기 추모 심포지엄 -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한창민·김영배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1(목) 14:00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신성범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실
7/11(목) 14:00	(과학기술인들이) 22대 국회에 바란다 - 글로벌 기술패권시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조승래·안철수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7/11(목) 14:00	대한민국 대표 K-스타트업 밸리 : 대전	장철민·박정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실
7/11(목) 15:00	기후위기 대응, 스포츠로 빌드업!	김소희 의원실	국회의사당 본관 182호
7/12(금) 12:00	노동입법 세미나 6강 - ILO 제87호, 제98호 협약 주요내용 및 국제동향	김주영 의원실, 민주노총 등	의원회관 306호
7/12(금) 14:00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 시장에서 공공으로	전종덕·김남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7/12(금) 14:00	패럴림픽대회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	김예지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3(토) 14:00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토론회 1 -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	이광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대회의실
자료집 등	7/8(월)	「THE 현안」 제18호 발간 - 주요국 도시재생 사례	국회도서관	
	7/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49호 발간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		
	7/10(수)	「금주의 서평」 제686호 발간 - 도서명 : 관계인구의 사회학 - 저자 : 다나카 데루미		
	7/10(수)	「World&Law」 제2024-13호 발간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		
	7/11(목)	「현안, 외국에선?」 제86호 발간 - 일본의 외국인 돌봄 인력 방안		
	7/8(월)	사업평가보고서 발간 -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7/1(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1호 발간 - 트럼프 2.0시대, 미중관계와 국제질서의 미래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4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7/1(월)	「THE 현안」 제17호 발간 -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	국회도서관	
	7/3(수)	「금주의 서평」 제685호 발간 - 도서명 : 정의로운 도시 - 저자 : 수전 S. 페인스타인		
	7/1(월)	사업평가보고서 발간 - 전문·숙련 외국인력 유치 정책 및 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7/4(목)	사업평가보고서 발간 - 대한민국 사회보험		
	7/4(목)	사업평가보고서 발간 - 생활체육 육성사업 평가		
	7/5(금)	「이슈와논점」 제2257호 발간 -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국회입법조사처	
	7/1(월)	「Futures Brief」 제24-06호 발간 - 미래세대(MZ세대)의 사회인식과 가치관 특성 : 세대별 비교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7.01~07.07)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7/2(화)	공정거래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2024 Vol. 3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